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60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최기상 · 김태년 · 이성운
한병도 · 오세희 · 김남근
김승원 · 김 윤 · 유동수
한정애 · 천하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역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국가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자녀의 연령 및 학령요건이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1일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 전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하여 민간분야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학령 요건 상한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에 대한 돌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위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4호 중 “8세”를 “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8세”로 한다.

제72조제7호 중 “자녀”를 “자녀가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때까지로 하되 자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휴직) ① (생 락)	제71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 ----- ----- -----. ----- -----.
1. ~ 3. (생 락)	1. ~ 3. (현행과 같음)
4. <u>8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 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u>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8세</u> ----- ----- ----- -----
5. ~ 7. (생 락)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락)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72조(휴직 기간) ----- -----.
1. ~ 6. (생 락)	1. ~ 6. (현행과 같음)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 직 기간은 <u>자녀</u>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7. ----- ----- <u>자녀가 9세 이하</u> <u>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u> <u>때까지로 하되 자녀</u> -----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